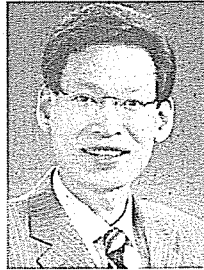


알기 쉬운 일반 상식 다문화가족 Q&A.



임동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상담사례

이 파탄상태이고 별거중이에요 저는 한국에 온지 3년됐지만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 못했어요 시댁에서 반대해서요

▶ 질문1

제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반대를해요. 그래서 재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혼판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두살짜리 아들은 올초에 필리핀에 보냈어요 아들은 제가 키울거예요

▶ 질문2

이 결혼식은 처음부터 정신지체인것을 안박하고 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귀책사유이고 이경우는 이혼을 안하고 우선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심사를 한후 이력사정을 참고해주시다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잘모르겠

저는 3년전에 필리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 한국에 왔어요 필리핀에서 만난지 하루만에 결혼식을 하는등 급하게 결혼을 했기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잘 알지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한거죠
한국에와서 보니 남편이 정신지체인것을 알았을때 너무 황당했고 결혼한것을 후회했어요. 어쩔수 없이 아이도 생기고 살다 보니 남편이 폭력까지 하는거예요 도저히 살수없어 지금은 가정

어요

저는 현재 F-2-1(국민의 배우자)비자가 있고 내년6월까지 기간이 남았어요 얼마전에 출입국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는데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당황해 제가 알기로는 바로보내지는 않고 심사후에 3개월정도의 비자를 새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하니 그렇다면서 불법체류가 아닌이상 이혼했다고 바로 출국조치 하지않고 우선 심사를 한후에 기존의 F-2-1(국민의 배우자)비자를 폐기하고 약3개월정도의 비자를 새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재혼을 한다면 그때 비자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우선출국을 해야한다고 해서 또 당황해 제가 알기로는 출국을 하지않고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단니까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때 결혼으로 들어왔기때문에 거주비자발급 전에 우선 혼인신고.임신등 여러상황을 고려해 우선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주비자를 발급을 하는데 그기준은 임신여부 같았어요. 출입국직원은 처음에는 우선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누가 갖다 주는게 아닌것 같아요. 특히 출입국업무는 더욱 그런거 같아요



▶ 질문 1에 대한 답변

한국인 남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혼인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이라면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입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이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책임없는 사유' 라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이나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반드시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중에 체류기간 만기가 다가올 경우에는 소송계속증명원을 구비해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연장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니 이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전부 개정령(시행 2011. 08. 04. 전문개정)

- 개정이유

법무행정 관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방 활동 중 주업무인 법무부 소속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 조사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실태, 여성, 외국인, 청소년 등 상대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 2. "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지적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진정 접수) ① 제10조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9조(진정의 각하) ①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 1. 진정 내용이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 시효 징계시효 및 미사사시효 등이 모두 완

려야 한다.

제11조(직접 조사)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한다.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① 검찰·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1.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지체하지 아니하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① 조사담당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물건 등의 보관) ①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진정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

할 수 있다.

제22조(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시설수용자인 경우) ①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구금·보호시설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23조(진정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

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의료·식사 및 옷 등의 제공
-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